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32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경협 현황 및 평가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 일자 **2017. 8. 4.**

발 표 **이상숙** 연구교수

토 론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발 행 일 **2017년 8월 24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이진원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32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경협 현황 및 평가

CONTENTS

서론 01
경제제재 관련 논의와 제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내용 03
2016년 북한 경제 현황과 제재 영향 평가 09
북중 경제협력으로 본 대북제재의 한계 21
정책적 고려 사항 27

1. 서론

≫ 북한이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7월 4일과 28일에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한 상황에서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였음.

≫ 2016년 북한의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한 상황에서 2016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2015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책임대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차갑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발생하여 시진핑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속되었음.

≫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2016년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을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음.

≫ 이 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2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 경협을 평가하고 대북제재 2321호와 2371호의 효과를 전망하고자 함.

이 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2016년 2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 하의 북한 경제와 북중 경협을 평가하고 대북제재 2321호와 2371호의 효과를 전망하고자...

≫ 또한 대북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 원인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서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대북제재의 한계 원인을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에서 분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경제제재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북중무역 및 기타 경제협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통계, 중국 국가 여유국(旅游局) 등의 통계를 활용하기로 함.

2. 경제제재 관련 논의와 제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내용

가. 경제제재 관련 논의

≫ 경제제재란 '대상 집단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실질적 또는 위협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인출(withdrawal)하는 것'으로서 정의됨.[1)]

-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는 자산 동결을 포함하여 여행 제한, 엠바고, 무역장벽, 수입 관세의 부과 등의 수단으로 실행되고 특정 개인, 집단, 기업을 목표로 하거나 전체 국가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포괄함.

≫ 경제제재의 목적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룰의 위반을 방지하고 특정 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한 것임.

-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조성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었음. 이 중에서 전자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나, 후자는 대부분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도층의 정책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임.
- 특히 북한 지도층과 일반 주민들을 분리시켜서 지도층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성한다는 전략은 사경제의 자본이 당경제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북한 경제의

1) Steve Chan & Drury Cooper, Sanctions ad Economic Statecraft: Theory and Practice, Houndmills, United Kingdom: Palgrave Macmillan, 2015.
2) Marina Klinova & Elena Sidorova, "Economic 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Russian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58, no. 3, 2016.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 경제의 어려움 조성은 지도층보다는 일반 국민들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확인해보면 경쟁국가 보다 전통적 경제 파트너 국가들이 경제제재에 포함될 때 경제 제재의 효과는 가장 효과적이며, 제재대상국에 대한 '흑기사(Black knight)'가 나타날 때 그 효과는 반감되므로[3] 중국이 흑기사 역할을 한다면 제재의 효과는 낮아질 것임.

- 현재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으로 미국의 경우 북한의 경제 파트너는 아니지만 강력한 양자제재와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력으로 북한 경제 제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2008년까지 북한의 주요 경제 파트너였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경제제재인 2010년 '5·24 조치'는 북한 경제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경제 파트너로서 대북제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재에 따른 예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음. 이중에서 중국은 북한과 경제 협력이 가장 큰 국가이므로 중국의 제재 이행이 북한 제재에 가장 큰 변수이며 중국이 흑기사 역할을 한다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경제 제재는 제재를 주도한 행위자와 제재 대상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신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고려한다면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 제재는 제재를 주도한 행위자와 제재 대상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4] 한국의 신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3) Bryan R. Early, "Unmasking the Black Knights: Sanctions Busters and Their Effects on the Success of Economic Sanctions, Foreign Policy Analysis vol. 7, no. 4., pp. 381-402.
4) T. Clifton Morgan, "Hearing the Noise: Economic Sanctions Theory and Anomalous Evid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no. 41, pp. 745-747.

고려한다면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제재를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이 만약 경제제재의 효과를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유보하고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협상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협상이 장기화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재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북한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초기에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동결을 목표로 한 협상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제재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제재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제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내용

≫ 대북제재는 1993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5호에서부터 시작하여 2004년 1540호, 2006년 1695호와 1718호, 2009년 1874호와 1887호, 2013년 2087호와 2094호가 체결되었고, 북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하여 2016년 2월 25일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후 3월 2일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었음.

≫ 북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집중되었던 이전 제재 결의안과 달리, 북한 광물을 중심으로 일반 무역에 대한 제재를 포괄하여 한층 강화된 제재라고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5)]

- 모든 회원국들은 물리학, 컴퓨터 공학, 항해술, 핵공학, 항공과학을 포함한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관련된 북한 인사들의 교육 및 훈련, 수리 등을 금지하고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물자의 이동을 금지함.

5) Resolution 2270(2016), S/RES/2270(2016),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

-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여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영토·영공을 지나가면 의무적 검색을 명시하였음.
- 북한 WMD 관련 품목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 조치도 기존의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였음. 캐치올이란 안보리가 특정한 금지물품이 아니더라도 WMD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국이 판단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함.
- 북한산 혹은 북한 항공·선박을 이용한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나 해외 생산의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민생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여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였음.
- 또한 북한산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도 금지하였으나 민간 승객을 위한 항공유의 재급유는 예외하였음.
-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제2경제위원회 등의 32개 단체와 개인 28명에 대한 국외자산 동결과 입국을 금지함.
- 북한의 금이 해외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금지하였고 북한 금융기관이 유엔 회원국 영토 내 지점, 사무소 신설을 금하였으며 기존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도록 하였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 유엔 활동, 외교관 활동에는 예외를 두었음.

≫ 이와 같이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4월 5일 중국의 상무부는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그리고 희토류의 수입 금지를 발표했고, 항공유에 속하는 5개 품목을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하였으나 민생 목적의 수입은 허용함으로써 여지를 남겨두었음.

≫ 이후 북한이 다시 2017년 9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하였는데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에 수출 상한제를 시행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6)]

- 예외 없이 북한 인공기 소유나 무국적기를 포함한 북한 선박에 대해 승무원 및 선박 서비스의 제공을 금하며, 위원회에서 인정된 에너지 수송 회항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항구의 입항을 금지하며 북한 선박의 소유, 임대, 가동 등을 금지하며 인증 및 선급 보험 관련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예외 없이 금지함.
- 2270호 안에 더하여 북한인들의 재료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관련 기술의 교육 및 훈련을 금하며 의료 분야를 제외한 공식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과학 및 기술적 협력을 금지함.
- 북한 공관 규모 축소를 촉구하고 WMD 관련 북한 관료, 정부인사, 군인의 입국을 금하며,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 검색을 명확히 하고 북한 은행 및 금융기관과 이에 대한 대리인에 대하여 북한 송환을 위한 추방을 결정함.
- 북한 외교관들의 전문 또는 상업 활동으로 개인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임대업을 금하며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안보리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총회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함.
- 철도와 도로를 통한 금지 품목의 이동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검색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인의 여행용 수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명시함.
- 제재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의 조형물 공급 및 판매, 이전을 금하며 북한에 신규 헬리콥터, 선박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의무를 강조하며 북한행·발의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함.

6) Resolution 2321(2016), S/RES/2321(2016),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321(2016).

◎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은 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며 매월 수입량은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었고 은, 동, 아연, 니켈 등의 수출 금지 광물을 추가하였음.

◎ 제재 이행에 대하여 회원국은 연 2회 전문가 패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재위원회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 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음.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자원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여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제재라고 평가 가능함

≫ 2017년 7월 채택된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이전 2270호와 2321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재의 틈을 막고자 석탄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자원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의 추가 고용을 제한하여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제재라고 평가 가능함.

◎ 결의안 2371호는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더하여 원산지가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는 라진항을 통한 수출을 제외한 북한산 철 및 철광석, 납의 수입 금지를 추가하였으며, 북한산 수산물도 수입 금지를 명시하여 북한의 대외 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음.

◎ 이와 동시에 북한의 외화 수입의 주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결의안 채택 시점의 근로자 수에 추가 고용을 금하였고 북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음.

3. 2016년 북한 경제 현황과 제재 영향 평가

가. 북한 경제성장률 통계[7]와 2016년 현황

≫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은행, 미국CIA, UN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1990년 이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성장률을 매년 추정해오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추정방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량 데이터 또는 추정치를 제공받아 한국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에 대입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추정함.
- 이 과정에서 SNA에 대입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치를 채워 넣고, 이 작업을 거쳐 남한 원화로 표시된 실질 GNI와 명목 GNI가 추정되고, 전자를 기초로 경제성장률이 산출됨.
- 기본적으로 북한의 GNI 추정이 한국의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한국의 가격과 환율을 이용하여 북한 GNI를 추정하면 북한의 소득과 다른 나라의 그것을 비교할 때 북한의 소득수준을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어 2007년 이후 한국은행은 달러표시 북한 GNI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1990년 이후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기관들을 보면 미국 CIA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은행 추정치와 유사하며, UN은 한국은행과 같은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음.

7) 이 부분은 김병연,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한국은행, 2014)를 정리한 것임.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는 전년 대비 3.9% 성장하였고 이것은 2005년 이후 북한의 GDP중 최대 성장률을 보인 것임

≫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는 전년 대비 3.9% 성장하였고 이것은 2005년 이후 북한의 GDP중 최대 성장률을 보인 것임.

○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행 추정치 중에서 북한의 최대 성장률은 1999년 6.1%였고 이는 북한이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을 벗어난 시기였음.

〈그래프 1〉 **년도별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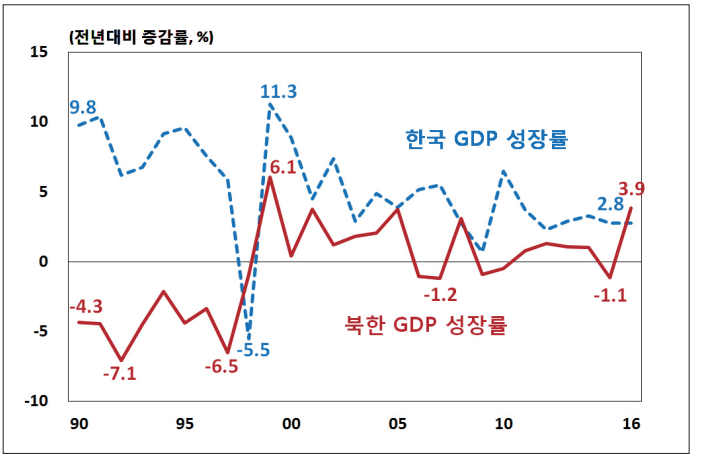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 동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북한의 국민 총소득(명목 GNI)는 36.4조원(원화 기준)이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6.1만원으로 한국의 4.6%(1/22) 수준임.

≫ 김정은 시대에 지속적인 1%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고 그 증가폭이 이전보다 큰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북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나 대외적 원인으로는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외수출의 축소를 들 수 있고, 대내적 원인으로는 2016년 북한 제7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공적 부분의 대규모 노력 동원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3월 대북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 수준임.

≫ 〈표 1〉과 같이 2016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의 성장이 주요 원인이며 전기·가스·수도업의 성장은 화력 및 수력 발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상황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1〉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2014-2016)**

구 분	2014	2015	2016
농 림 어 업	1.2	-0.8	2.5
광 공 업	1.1	-3.1	6.2
광업	1.6	-2.6	8.4
제조업	0.8	-3.4	4.8
(경공업)	(1.5)	(-0.8)	(1.1)
(중화학공업)	(0.5)	(-4.6)	(6.7)
전기가스수도업	-2.8	-12.7	22.3
건설업	1.4	4.8	1.2
서비스업	1.3	0.8	0.6
(정부)	(1.6)	(0.8)	(0.6)
(기타)	(0.5)	(0.6)	(0.5)
국 내 총 생 산 (GDP)	1.0	-1.1	3.9

※ 서비스업의 기타 부분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및 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1990년 이후부터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방향과 추이는 신뢰할 수 있으나 2000년대 최근 북한의 활성화된 사경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추정치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표 2〉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 부분의 비중이 22.4%이고 기타 부분이 8.7%로 나타나지만, 최근 북한의 서비스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분이 아니라 민간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경제임.

〈표 2〉 **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한국 십억원, %)

	실 질		증감률	명 목		구성비 (2016)
	2015	2016		2015	2016	
농 림 어 업	6,967.9	7,144.1	2.5	7,388.9	7,832.6	21.7
광 공 업	10,765.6	11,428.7	6.2	11,153.6	11,980.1	33.2
광 업	4,418.0	4,790.4	8.4	4,178.1	4,547.4	12.6
제 조 업	6,353.1	6,657.9	4.8	6,975.5	7,432.7	20.6
전기 가스 수도업	975.4	1,192.5	22.3	1,543.0	1,874.5	5.2
건 설 업	2,576.5	2,608.7	1.2	3,063.9	3,194.7	8.8
서 비 스 업	9,505.2	9,561.6	0.6	10,987.4	11,221.4	31.1
정 부	6,860.6	6,904.4	0.6	7,942.3	8,098.4	22.4
기 타	2,644.4	2,657.1	0.5	3,045.1	3,122.9	8.7
(도소매 및 음식숙박)	132.6	127.5	-3.9	135.5	134.7	0.4
(운 수 및 통 신)	764.4	762.8	-0.2	891.2	915.4	2.5
(금융 보험 부동산)	1,749.1	1,767.9	1.1	2,018.4	2,072.8	5.7
국내총생산	30,804.9	31,996.6	3.9	34,136.7	36,103.3	100.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나. 북한의 무역 통계[8]와 2016년 현황

≫ 1990년 이후 북한의 무역 통계는 KOTRA가 편찬한 통계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KOTRA는 세계 각국 세관당국의 무역통계에서 북한과의 교역내용을 추출해 매년 「북한의대외무역동향」이라는 자료로 발간하고 있음.

- KOTRA 통계는 교역상대국별, 품목별, 연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일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정부의 북한경제 관련 통계나 자료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음.

≫ UN 상품무역통계(Comtrade: Commodity Trade Statistics)는 세계 대부분 국가 무역통계의 연도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HS,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등 여러 코드별로 세부 단위까지 품목별 통계를 물량 정보까지 포함해 제공하고 있어 KOTRA 통계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정보까지 포함한 방대한 북한 무역통계 편찬이 가능함.

- 그러나 UN의 통계는 북한의 교역 상대국이 KOTRA 통계보다 훨씬 광범위한 90-140개 정도이나 이중에는 한국과의 무역을 북한과의 무역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KOTRA의 무역 통계의 정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UN 통계에는 북한과 교역 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통계에서 북한의 수출품에 LCD TV나 반도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역 종사자들이 남북한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 착오 기재가 포함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또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무역통계는 1998년 자료부터 제공되고 있고, HS 8단위까지 세부 품목별 자료가 월별로 상세하게 나오며 물량 및 단가 정보까지 제공됨.

8) 이 부분은 김석진, "북한 무역 통계: 해설과 평가,"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한국은행, 2014)를 정리한 것임.

2016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총 65억 5천만 달러로 이중 수출은 28억 2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37억 3천만 달러이며, 2015년 대비 4.7% 증가한 것임

≫ 〈표 3〉과 같이 2016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총 65억 5천만 달러로 이중 수출은 28억 2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37억 3천만 달러이며, 2015년 대비 4.7% 증가한 것임.

○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2014년 대비 17.9%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2016년은 큰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2015-2016년)**

북한의 대외 무역규모(남북교역 제외) (억달러)		
구 분	2015	2016
교 역 규 모	62.5	65.5
	(-17.9)	(4.7)
수 출	27.0	28.2
	(-14.8)	(4.6)
수 입	35.6	37.3
	(-20.0)	(4.8)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4〉 **년도별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2011-2016년)**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수출	2,464 (107.4)	2,485 (0.8)	2,912 (17.2)	2,841 (-2.4)	2,483 (-12.6)	2,634 (6.1)
수입	수입	3,165 (38.9)	3,446 (8.9)	3,633 (5.4)	3,523 (-3.0)	2,946 (-16.4)	3,192 (8.3)
총무역		5,629 (62.4)	5,931 (5.4)	6.545 (10.4)	6,364 (-2.8)	5,430 (-14.7)	5,826 (7.3)
무역수지		-700 (35.7)	-961 (-37.1)	-721 (24.9)	-681 (5.6)	-462 (32.1)	-557 (-20.6)

출처: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 〈표 4〉와 같이 전체 북한의 무역액 중 2016년 북중무역은 58억 2,600만 달러로 2015년의 54억 3천만 달러보다 7.3% 증가하였음.

- 양국 무역은 2013년과 2014년 양국 무역이 각각 65억 4,500만 달러와 63억 6,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크게 감소하다가 2016년 소폭 증가하였음.

≫ 2016년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요청에 중국이 호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북중 무역의 증대는 양국 무역에 제재의 영향이 미약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함.

- 2014년과 2015년 양국의 무역이 감소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2270호가 실행된 2016년 무역액이 증가한 것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것임.

≫ 특히 북중무역에는 중국을 우회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우회무역을 단속하면서 2016년 한국과의 우회무역이 7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의 증가분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기준으로 북한 수출에서 우회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억 달러)이고 이중에서 한국의 우회무역은 56%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9)]

다. 북한의 식량 상황

≫ FAO에 따르면 북한의 2016/2017년(양곡연도 2016년 11월~2017년 10월) 식량

북한의 2016/2017년(양곡연도 2016년 11월~2017년 10월) 식량 생산은 곡물 생산량이 2015/2016년의 542만 톤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596만 톤으로 추정됨

9) 최장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생산은 곡물 생산량이 2015/2016년의 542만 톤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 596만 톤으로 추정됨.

- 북한은 2016년 가을 추수한 쌀, 옥수수, 감자, 콩 등의 주요 작물 수확량은 544만 톤으로 2015년보다 약 14% 증가하였고, 쌀 생산량은 254만 톤으로 2015년보다 30% 증가하였음.

≫ 이러한 북한의 식량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식량 부족분은 45만 8천 톤이며, UN FAO 통계 중 2014-2016년의 3년간 영양부 족 최하위 국가 순위에서 하이티, 잠비아, 중앙아시아, 나미비아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7~8월 일부 지역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식량 생산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거나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10] 식량 생산량이 10% 증가한 것은 유의미한 증가라고 평가 가능함.

라. 2016년 북한 경제에 대한 대북제재(2270호)의 영향

≫ 대북제재의 효과가 주로 대외무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분석한 방호경의 연구에 따르면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입 중 물량과 단가 변화라는 내연적 요인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 반면, 교역품목 다변화라는 외연적 요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11]

10) 최용호, "2015/2016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농촌경제연구원, 2016), p. 11.
11) 방호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동북아 경제연구』, 제28권 4호(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6), p. 148.

- 내연적 요인에 대한 영향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 품목 수의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무기 및 사치품뿐만 아니라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선박 검색 강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북한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법 거래인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무기 및 사치품 수입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 점도 대북제재의 중요한 효과라고 평가됨.

- 대북제재 이후 북한과 중국은 양국 불법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최첨단 통신 교란 장비들을 구입하여 밀무역을 하는 이들이 상호 연락이 어렵게 되었다고 알려짐.[12)]

≫ 그러나 대북제재의 효과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2016년 북한 경제 성장률과 식량생산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2016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규모 자체가 증가하였고 중국과의 무역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됨.

대북제재의 효과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2016년 북한 경제 성장률과 식량생산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2016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규모 자체가 증가하였고 중국과의 무역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됨

12) 림금숙, "대북제재가 북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수은 북한경제』, 통권 제51호(2016), p. 8.

〈표 5〉와 같이 월별 중국의 대북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감소하고 다시 반등하다가 9월에 감소하였으나 10월부터 다시 급등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증대되어 대북제재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5월부터 7월까지의 감소는 대북제재 2270호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4월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이며, 다시 9월분의 감소는 북한 제5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평가됨.
- 이중에서 2016년 12월의 급격한 증가분은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12월분에 이에 대한 예상 대응이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됨.

〈표 5〉 **2016년/2017년 상반기 중국의 월별 대북한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211,225	161,513	236,269	268,780	240,016	288,069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82,606 (-4.0)	167,268 (2.5)	237,241 (13.1)	167,698 (22.3)	180,808 (-12.6)	215,702 (-3.2)
계	393,832	328,782	473,510	436,478	420,824	503,77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4,076	336,957	285,811	286,861	350,990	336,237	3,196,804
232,056 (-5.0)	291,341 (16.4)	234,575 (-6.9)	238,379 (23.1)	262,248 (34.1)	297,063 (42.2)	2,706,985
426,132	628,298	520,386	525,239	613,237	633,300	5,903,789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241,488	176,719	328,007	288,168	319,764	326,850
수입	206,873	151,917	114,557	99,266	123,748	162,173
계	448,361	328,636	442,564	387,433	443,512	489,023

출처: <국쑷统计咨询网> www.chinacustomsstat.com

» 제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과 제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의 양국 무역은 상반기에 대북제재가 결의되면 유의미한 무역축소 등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위축되었던 무역수요 등이 반영되어 상반기의 축소 분을 상쇄할 만큼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 〈그래프 3〉과 같이 2013년 역시 3월부터 6월까지 제3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다가 하반기인 7월부터 다시 회복된 흐름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제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과 제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의 양국 무역은 상반기에 대북제재가 결의되면 유의미한 무역축소 등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위축되었던 무역수요 등이 반영되어 상반기의 축소 분을 상쇄할 만큼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그래프 3〉 **2013년 월별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증감률 추이(전년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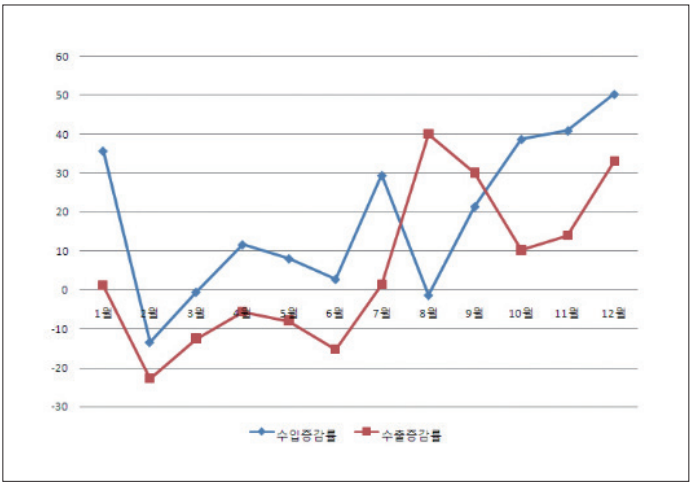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단위: %).

≫ 또한 〈표 5〉와 같이 2017년 상반기는 2월 18일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관한 공고에 따라 3-6월까지 양국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북제재 2321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나 하반기 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함.

4. 북중 경제협력으로 본 대북제재의 한계

가. 북중무역의 변화

1)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대체: 석탄에서 철광석으로

≫ 북한 대외무역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북한의 석탄 수출 감소이나, 2016년 북한 월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석탄 수출액 감소를 철광석 수출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표 6〉과 같이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석탄 수출액이 감소하자 5월부터 9월까지 철광석 수출액이 늘어났으며 8월부터 석탄 수출액이 확대되자 10월부터 철광석 수출액이 하락하였음.
- 2010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였음.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석탄 수출액이 감소하자 5월부터 9월까지 철광석 수출액이 늘어났으며 8월부터 석탄 수출액이 확대되자 10월부터 철광석 수출액이 하락하였음

〈표 6〉 **2016년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석탄	76,450 (-4.1)	68,274 (-14.2)	105,550 (30.3)	72,108 (-38.2)	74,540 (-28.3)	87,879 (-17.7)
철광석	2,660 (-64.8)	2,645 (-35.9)	3,945 (-42.0)	4,536 (20.9)	9,977 (46.2)	11,703 (207.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9,258 (-11.5)	111,991 (27.3)	82,380 (0.6)	101,145 (69.6)	139,376 (112.1)	168,056 (104.7)	1,177,007 (12.5)
10,244 (74.8)	7,956 (19.8)	6,454 (-19.4)	2,196 (-69.2)	5,821 (48.7)	4,832 (-11.4)	72,970 (4.4)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임수호, "대북제재와 북중경협," 『북한연구학회 2017 춘계 자료집』 (2017).

≫ 북중무역에서 2013년을 기점으로 석탄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이미 석탄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수출의 금지라는 제재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가격이 2013년 초반에 비해 2015년 후반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였음.[13)]

≫ 이에 따라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북한산 철, 철광석과 납의 광물자원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북한의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북한 광물자원 수출에서 석탄의 감소와 철광석의 확대로 대체가 가능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자원 개발 협력이 중국기업의 채굴권을 주지 않고 양국 기업의 합작(Contractual Joint Venture)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의 광물자원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북한 당국은 독점적인 채굴권을 주지 않고 '공동 채광권'을 부여하여 북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수출액을 채우기 위하여 가격이 하락세인 석탄 대신 철광석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임.

13) 이석,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통일정세분석』(2016).

2) 북한의 대중 임가공무역 확대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에는 북한의 대중 봉제의류 수출액은 6억 1,150만 달러로 2015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전체 의류 수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 중국 의류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앞으로 확대될 전망임.

-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 의류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보다 임금에서 경쟁력이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 주목한 것임.
-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제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의 중국 동남부 공업지역으로 이탈하여 인력 부족현상도 심화되었음.

≫ 북한의 의류 임가공 교역 규모를 보여주는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5년에 사상 최대치인 약 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석탄 수출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음.

- 상대적으로 물량이 큰 봉제의류의 대중수출은 2009년 5,6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6억 2,2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5년 사이 11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5년 북한의 의류 임가공 교역 규모는 2015년 니트웨어류(HS 61)은 약 1억 6,600만 달러로 2014년보다 40%나 증가하였고 봉제의류(HS 62)는 약 6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2013년-2014년간 평균 300만 달러 이상의 방직기, 합사기 등의 방직설비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바 있음.

≫ 중국 해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봉제의류(HS 62)'가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약 27%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북한의 의류 임가공 교역이 가장 집중된 지역은 중국 랴오닝성으로 북한의 대중 의류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옌볜 훈춘시 운달편직복장유한공사, 훈춘명욱실업유한공사 등의 회사들은 북한 나선시의 라진혜성회사 등 기업들과 합작하여 편직물 위탁가공을 하고 있는데 편직물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짐.
- 단 대북제재로 인하여 4~7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하반기에는 그 영향이 약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 광물자원의 수출이 제한될수록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임가공제품 수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홍콩을 경유한 북한의 임가공무역도 상승세에 있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원유 공급 및 북한의 노동자 파견

≫ 북한의 대중 무역 수지를 보면 지속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 수지로 이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기에는 송유관을 통한 중국의 원유 지원 및 무상 지원이 있음.

- 중국 해관 당국이 집계하는 북·중 간 무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매년(2009~2012년) 약 52만 톤의 원유를 수출하였음. 이는 주로 북한의 5000톤 규모의 유조선 및 소형 유조선을 통해 북한으로 수송되어 왔음.
- 중국의 해관은 2013년 약 6억 달러의 대북한 원유 수출을 통계를 내놓았으나 2014년부터 북한의 원유 수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북한 노동자 파견 역시 주요한 외화 획득 수단으로 〈표 7〉과 같이 2013-2015년간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중국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수는 18~20만 여명 정도이고 이중 절반인 9만 여명이 노동자 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

〈표 7〉 **2013-2015년 북한인의 중국 출입국 현황** (단위: 만 명)

구 분	공무	여행	친지 방문	취업	기타	합계
2013년	5.51	0.29	0.03	9.33	5.50	20.66
2014년	3.39	0.15	0.01	8.91	5.97	18.44
2015년	2.59	0.15	0.01	9.42	6.67	18.83

출처: 중국 국가여유국(www.cnta.com)

≫ 그러나 2016년 통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 국가여유국은 매년 1월에 전년도 국가별, 목적별 출입국 현황을 발표하던 세부통계를 2017년 7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분기별 규모를 확인하면 북한에 대한 항목이 없고 기타 아시아 분류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 세부적으로 북한 입국 인구와 취업 항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년 수준인 것으로 추정 가능함.

≫ 2016년 8월 현재 단둥시 상주 북한 인력(노무인력 및 무역상 포함)은 약 3만 명 선으로 추정되는데 투먼시 조선공업원의 경우 2016년 8월 북한 인력 4천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훈춘국제합작시범구(国际合作示范区)의 경우 약 3천 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14)]

≫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나,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나,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14) 이종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정책브리핑』 no. 2016-21(2016).

-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들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결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다. 관광수입

≫ 북한의 또 다른 외화 획득은 관광수입을 들 수 있는데 관광의 경우 대북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이긴 하나 여행제한국가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북한 관광은 지속될 것임.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단둥시 항국를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65만여 명이며 2016년 7월 9일부터 북한은 중국 단둥시와 북한 신의주간 무비자관광을 허용하여 하루 350위안으로 신의주 1일 관광이 가능해졌음.

- 단둥 이외에도 옌볜지역의 대북관광 주요루트로는 훈춘나진 관광, 삼합-칠보산 버스 관광, 하이화 그룹이 운영하는 도문-칠보산 열차관광, 고성리-삼지연-백두산 천지 관광, 고성리-무봉-백두산 천지 관광, 천우그룹의 연길-평양 전세기 관광이 있음.

≫ 또한 2016년 7월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은 다국관광 노선 개통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정식으로 백두산 관광 코스를 운영하기로 하여 나진항에 있는 만경봉호 유람선을 활용하기로 하였음.

≫ 이외에도 2016년 5월 북한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 외에 칭다오와 지난 항선을 개설하였고, 7월에는 타이위앤 항선을 운영하면서 중국 남부지역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여 대북제재 속에 북한이 관광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5. 정책적 고려 사항

가. 제재의 목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 대북제재의 최종 목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현 정부의 제재 강화 목적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위하여 제재를 강화해야 하나,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는 시점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위하여 제재를 강화해야 하나,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는 시점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나.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 이행을 위해 나진항을 주목해야

≫ 2017년 상반기 북한의 수출 통계를 보면 안보리 결의안 2321호의 석탄 수출 상한제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를 상쇄하는 철광석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철광석 수입 금지를 포함하여 북한 외화 획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산지로 확인된 광물자원의 나진항 통과는 가능하기 때문에 나진항을 통한 북한산 광물자원의 편법 반출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제한 조항의 한계

≫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의 확대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 및 러시아의 실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대 제한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중국의 경우 매년 초 공개하던 국가별 및 입국목적별 중 2016년 통계를 2017년 7월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라. 북한의 임가공무역 확대를 주시하여야

≫ 북한의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은 임가공무역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임금 상승과 랴오닝성 등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북한의 임가공무역 확대가 나타날 것이며, 특히 홍콩을 통한 임가공무역 확대 현황도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

중국 중앙정부는 대북제재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이를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다면 제재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 중국 중앙정부는 대북제재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이를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다면 제재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 대북제재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몇 개월 이후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중국 동북3성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동북3성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긴요함.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FANS